

2021년도 제2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2. 22.(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96건(안건번호 제2021-18576호~1913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8576호~19136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III.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5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2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회의록 6쪽의 온라인서비스명, 게시자명, 7쪽, 9쪽의 원저작물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명 등 민원인을 특정할 수 있

거나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공개 처리안에 동의함.
- B 위원: 같은 의견임. 심의위원회 회의공개 규정에 따라 비공개 하는 것에 동의함.
- C 위원: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비식별 처리가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2호 안건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79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1-18576호~19136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8576호~18578호는 실명의 민원인 2명이 각각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8576호~1857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C 위원: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건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해당 안전들은 모두 데드카피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가결함.
- A 위원: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만화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건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8576호~18578호는 게

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8579호~19136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소리도 없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8881호는 2020. 10. 15.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187포인트에 판매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제41회 청룡영화상 수상작임. 2020. 11. 17.부터 27.까지 청룡영화상 후보작을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무료 공개하는 영상제가 열림. 이처럼 영상 저작물의 VOD 서비스가 시작되거나 온라인을 통한 무료 공개 또는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면 보이지 않던 불법복제물이 다시 유통되는 경향이 있음.

(영화 ‘빛의 아버지: 파이널 판타지 XIV’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8903호는 2021. 1. 14. 개봉한 일본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115포인트에 판매중인 사안임. 2021. 1. 25. 극장 동시 VOD 서비스를 개시함.

(게임 ‘하데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9070호는 2020. 9. 17. 출시한 게임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1,200포인트에 판매중인 사안임. 합법 사이트에서는 26,000원에 판매되고 있음.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18579호~1913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8579호~1913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8576호~1913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2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

함.

2021년 제2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3. 8.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